
Policy and Law Report _Vol.10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8.23~ 8.29) -

August 30, 2021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 뉴스레터가 지난2019년9월 첫 호가 고객 여러분들에게 Release된 이후 어느덧100호가 발송되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동 뉴스레터에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팀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p>기획재정부는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추석 민생안정대책 ③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4.1조원, 9월말→8월말),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공급 확대(年 7~8→9~10조원)도 추진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270만명, 6.2조원),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료·공과금) '21.10~12월분 3개월 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①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②유망분야로의 재창업 ③디지털·스마트化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化 지원(개사):('21)3,600→('22)7,000 / 온라인 판로지원(만명):('21)5.3→('22)6 ●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완료후 발표예정 ④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주요 지표의 핵심·공통문항('21.12) → 기업 규모·업종별 차별화('22~'23) ●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 ●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22)도 추진 방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요원 인건비,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⑤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인수합병, 구주 매각 등 회수수단 다변화 등이 있음 	<p>2021-08-26</p>

부처	내용	일시																																																									
문화체육관광부	<p>• 문체부·여가부·교육부 합동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 게임 섯다운제 폐지, 자율적 섯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p> <p>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섯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게임 섯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자율방식으로 제도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섯다운제를 폐지하되, 게임시간 섯택제로 가정 내 섯택권을 지원 <p>② ‘게임시간 섯택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 등 다양한 과몰입 예방 제도 시행</p> <p>③ 보호자와 교사 대상 게임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지원</p> <p>④ 청소년 유해게임을 점검 강화 및 유해 요소 차단 신기술 개발 등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 등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향후 추진 계획 ></p> <table border="1" data-bbox="343 996 1310 2004"> <thead> <tr> <th>세부 과제</th> <th>소관 부처</th> <th>추진일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섯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섯택권 부여</td> </tr> <tr> <td>• 섯다운제 폐지</td> <td>여가부, 문체부</td> <td>'21~</td> </tr> <tr> <td>• 게임시간 섯택제 운영 내실화</td> <td>문체부</td> <td>'22~</td> </tr> <tr> <td>• 청소년 교육 확대</td> <td>문체부, 교육부, 여가부</td> <td>'21~</td> </tr> <tr> <td colspan="3">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td> </tr> <tr> <td>•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확대</td> <td>문체부, 교육부</td> <td>'21~</td> </tr> <tr> <td>• 게임 관련 정보 제공</td> <td>문체부</td> <td>'21~</td> </tr> <tr> <td colspan="3">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td> </tr> <tr> <td>•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 기능 강화</td> <td>문체부</td> <td>'22~</td> </tr> <tr> <td>• 게임 관련 사행·선정성 요소 최소화</td> <td>문체부</td> <td>'22~</td> </tr> <tr> <td>•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 지원</td> <td>문체부, 교육부, 여가부</td> <td>'21~</td> </tr> <tr> <td>• 게임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td> <td>문체부, 교육부</td> <td>'21~</td> </tr> <tr> <td colspan="3">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td> </tr> <tr> <td>• 신속한 싯태 파악 지원</td> <td>여가부, 문체부</td> <td>'21~</td> </tr> <tr> <td>• 게임 과몰입 청소년 사후 지원 강화</td> <td>교육부, 문체부, 여가부</td> <td>'21~</td> </tr> <tr> <td colspan="3">다양한 여가활동 지원</td> </tr> <tr> <td>•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td> <td>교육부, 문체부</td> <td>'21~</td> </tr> <tr> <td>•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td> <td>교육부, 문체부, 여가부</td> <td>'21~</td> </tr> </tbody> </table>	세부 과제	소관 부처	추진일정	섯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섯택권 부여			• 섯다운제 폐지	여가부, 문체부	'21~	• 게임시간 섯택제 운영 내실화	문체부	'22~	• 청소년 교육 확대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21~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확대	문체부, 교육부	'21~	• 게임 관련 정보 제공	문체부	'21~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 기능 강화	문체부	'22~	• 게임 관련 사행·선정성 요소 최소화	문체부	'22~	•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 지원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21~	• 게임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문체부, 교육부	'21~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 신속한 싯태 파악 지원	여가부, 문체부	'21~	• 게임 과몰입 청소년 사후 지원 강화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21~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교육부, 문체부	'21~	•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21~	2021-08-25
	세부 과제	소관 부처	추진일정																																																								
	섯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섯택권 부여																																																										
	• 섯다운제 폐지	여가부, 문체부	'21~																																																								
	• 게임시간 섯택제 운영 내실화	문체부	'22~																																																								
	• 청소년 교육 확대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21~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확대	문체부, 교육부	'21~																																																								
	• 게임 관련 정보 제공	문체부	'21~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 기능 강화	문체부	'22~																																																								
	• 게임 관련 사행·선정성 요소 최소화	문체부	'22~																																																								
	•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 지원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21~																																																								
	• 게임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문체부, 교육부	'21~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 신속한 싯태 파악 지원	여가부, 문체부	'21~																																																									
• 게임 과몰입 청소년 사후 지원 강화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21~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교육부, 문체부	'21~																																																									
•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21~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p> •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 대폭 개선 </p> <p>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함.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됨 </p> <p> 주요 내용으로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치평가 기반마련)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 ②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③ (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 역량 강화) 음악, 콘서트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 <p>* (기존) 영화, 게임, 뮤지컬 등 6개 분야 → (개선) 음악, 콘서트 등으로 확대</p> ④ (부처간 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 등이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 주요 개선내용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5580;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580; color: white;">현행</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40; color: white;">개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ff;">① 법적기반 마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IP 가치평가 전문가의 불명확한 법적지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IP 가치평가’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 (산업부·특허청, ~'21년下)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ff;">② IP평가기관 등 전문성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품질 저하 우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등, 즉시)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산업부, ~'21년下)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ff;">③ 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평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서비스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공공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년上)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년上)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0ff;">④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로 가치평가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부처 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주관, ~'21년下) </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선	① 법적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IP 가치평가 전문가의 불명확한 법적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IP 가치평가’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 (산업부·특허청, ~'21년下) 	② IP평가기관 등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품질 저하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등, 즉시)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산업부, ~'21년下) 	③ 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평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서비스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공공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년上)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년上) 	④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로 가치평가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부처 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주관, ~'21년下) 	2021-08-20
구분	현행	개선															
① 법적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IP 가치평가 전문가의 불명확한 법적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IP 가치평가’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 (산업부·특허청, ~'21년下) 															
② IP평가기관 등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품질 저하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등, 즉시)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산업부, ~'21년下) 															
③ 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평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서비스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공공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년上)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년上) 															
④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로 가치평가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부처 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주관, ~'21년下)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p>•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p> <p>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 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함.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2021-08-26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8 732 603 801"></th> <th data-bbox="603 732 970 801">현황</th> <th data-bbox="970 732 1310 801">개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8 801 603 949">①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 축소</td> <td data-bbox="603 801 970 949">도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을 통보</td> <td data-bbox="970 801 1310 949">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td> </tr> <tr> <td data-bbox="328 949 603 1160">② 경량화물차 적재물 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td> <td data-bbox="603 949 970 1160">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td> <td data-bbox="970 949 1310 1160">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td> </tr> <tr> <td data-bbox="328 1160 603 1279">③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td> <td data-bbox="603 1160 970 1279">공동주택 분쟁조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td> <td data-bbox="970 1160 1310 1279">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td> </tr> <tr> <td data-bbox="328 1279 603 1458">④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td> <td data-bbox="603 1279 970 1458">가스운송화물차의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업계의 부담을 가중</td> <td data-bbox="970 1279 1310 1458">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td> </tr> <tr> <td data-bbox="328 1458 603 1637">⑤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td> <td data-bbox="603 1458 970 1637">너비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의무</td> <td data-bbox="970 1458 1310 1637">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선 등 작업 간소화</td> </tr> <tr> <td data-bbox="328 1637 603 1816">⑥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td> <td data-bbox="603 1637 970 1816">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는 경우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td> <td data-bbox="970 1637 1310 1816">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td> </tr> <tr> <td data-bbox="328 1816 603 2027">⑦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td> <td data-bbox="603 1816 970 2027">‘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알 수 없어 이후 폐차 당시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td> <td data-bbox="970 1816 1310 2027">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td> </tr> </tbody> </table>			현황	개선	①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 축소	도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을 통보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	② 경량화물차 적재물 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	③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	④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가스운송화물차의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업계의 부담을 가중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	⑤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너비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의무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선 등 작업 간소화	⑥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는 경우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	⑦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
	현황	개선																						
①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 축소	도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을 통보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																						
② 경량화물차 적재물 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																						
③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																						
④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가스운송화물차의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업계의 부담을 가중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																						
⑤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너비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의무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선 등 작업 간소화																						
⑥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는 경우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																						
⑦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알 수 없어 이후 폐차 당시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부처	내용		일시				
	<p>⑧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 개선</p>	<p>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 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이나,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p>	<p>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p>				
	<p>⑨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확대 등이 있음</p>	<p>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의 기존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p>	<p>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p>				
<p>중소벤처기업부</p>	<p>•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p> <p>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본’이 충분히 유입되어 ‘제2벤처붐’이 공고해지도록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발표,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비전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4a7c9c; color: white; padding: 5px;">추진전략 </td> <td style="background-color: #2e5496; color: white; padding: 5px;">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p>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선(’21~’22) : 비과세 한도 확대(3천만원 → 5천만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추진 (시가 이상 발행 스톡옵션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추가)</p> <p>② 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21~’22) : 2027년까지인 일몰기한 폐지 포함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p> <p>③ 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21)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강소기업100 등(현재는 100억원)</p> <p>④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21) : 펀드 추가조성 및 투자대상 확대, 해외 VC 교류기회 제공 등</p> <p>⑤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ESG 벤처투자 추진(’22) : 기후 기술기업(기후대응보증), ESG 우수기업(ESG펀드) 등 대상</p> </td> </tr> </table>		추진전략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p>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선(’21~’22) : 비과세 한도 확대(3천만원 → 5천만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추진 (시가 이상 발행 스톡옵션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추가)</p> <p>② 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21~’22) : 2027년까지인 일몰기한 폐지 포함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p> <p>③ 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21)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강소기업100 등(현재는 100억원)</p> <p>④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21) : 펀드 추가조성 및 투자대상 확대, 해외 VC 교류기회 제공 등</p> <p>⑤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ESG 벤처투자 추진(’22) : 기후 기술기업(기후대응보증), ESG 우수기업(ESG펀드) 등 대상</p>		<p>2021-08-26</p>
추진전략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p>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선(’21~’22) : 비과세 한도 확대(3천만원 → 5천만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추진 (시가 이상 발행 스톡옵션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추가)</p> <p>② 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21~’22) : 2027년까지인 일몰기한 폐지 포함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p> <p>③ 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21)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강소기업100 등(현재는 100억원)</p> <p>④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21) : 펀드 추가조성 및 투자대상 확대, 해외 VC 교류기회 제공 등</p> <p>⑤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ESG 벤처투자 추진(’22) : 기후 기술기업(기후대응보증), ESG 우수기업(ESG펀드) 등 대상</p>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보건 복지부	<p>•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8.24 시행)</p> <p>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생산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합계 기준 3천제곱미터 이하에서 5천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변경을 승인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그 설치·변경을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임</p>	2021-08-24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2.1.1. 시행예정)</p> <p>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의 경우에도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려는 것임</p>	2021-08-24
금융 위원회	<p>•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8.24 시행)</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2022년 1월 31일까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p>	2021-08-24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p> <p>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 ② 페트병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무게 기준 신설 ③ 합성수지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 분류기준 및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 조정 ④ 기타 용어 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등이 있음 <p>※ 의견제시기간 :8/23(월)~9/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p>	2021-08-23
	<p>•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 <p>「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4호)」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자료 제출항목 간소화, 평가 지표 및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자체의 운영실적 제출률 제고(안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 적용하고 결과 공개 ②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안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의 연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 연장(2→3년) ③ 이해충돌 방지(안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분석기관의 직원이 우수기관과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지하고 대리자를 지정 	2021-08-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④ 기술지원 효과 제고 (안 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원의 결과로 성능향상 및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설 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p>⑤ 평가제도 개선 (안 별표2, 별표3, 별표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항목 간소화,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 안전성 지표 신설, 자원순환 목표 지표(최종처분율, 실질재활용율) 추가, 평가 등급 개편(절대 → 상대평가), 평가 이원화(처리시설, 처리사업 분리) <p>※ 의견제시기간</p> <p>:8/24(화)~9/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p>	
국토 교통부	<p>•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부여하고, '21.8.10. 개정된 「주택법」(’22.2.11.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주택감리 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확인” 추가 (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p> <p>② 감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으로 정함 (안 별표5)</p> <p>※ 의견제시기간</p> <p>:8/23(월)~10/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p>	2021-08-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위원회	<p>•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p> <p>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관련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며, 지주회사 등의 연간 사업보고 관련 제출서류 및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보고절차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 (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투자 현황 및 출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제출서류 양식 등을 규정 (안 제14조제1 2항, 별지 서식 제12 14호 신설) <p>②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사전신청 절차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 마련 (안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 종류 규정 (안 제15 18조, 별지서식 제15호 신설) <p>③ 지주회사 사업보고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개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또는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4조제2호) ● 지주회사는 매년 사업보고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법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문화 (안 제11조 단서 신설) ● 별지 서식상 작성지침 및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그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목, 용어, 조문번호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며, 조문상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p>※ 의견제시기간 :8/27(금)~9/17(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지주회사과)로 제출</p>	2021-08-2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p> <p>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p> <p>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안 제22조의9제1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9제2항) ③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 (안 제45조의2) ④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50조제1항제9호) ⑤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50조제1항제10호) 	<p>2021-08-25</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p>•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p> <p>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 등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론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하고,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함 (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②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함 (안 제14조제1항) ③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④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되,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제6항) ⑤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의2) ⑥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내용을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의무를 신설함 (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⑦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후보자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30조의2) 등이 있음 	2021-08-2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p> <p>최근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수소터빈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실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15GW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를 2040년, 수소가스터빈 사용발전을 2035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p> <p>향후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탄소 감축 및 수소의 수요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소 혼소율이 30%일 때 CO₂의 약 515만톤, 50%의 경우 CO₂의 약 1,061만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380MW 용량의 수소가스터빈은 연간 약 13만대의 수소전기차에 해당하는 수소 사용효과를 창출하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면서 빠르게 수소경제를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p> <p>또한,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연소 방식을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가스터빈을 폐기하여 신규 설치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그 비용이 크게 절감됨</p> <p>이에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안 제2조 및 제25조)</p>	2021-08-23
	<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p> <p>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유통·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음</p> <p>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60조의3 신설 등)</p>	2021-08-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p>•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p> <p>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음</p> <p>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 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의2제1항)</p> <p>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 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의료기 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8조의2제2항)</p> <p>③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 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 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38조 의2제4항)</p> <p>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 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안 제38조의2제5항)</p> <p>⑤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 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8 조의2제9항)</p>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9/3(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4호 발간	
국회도서관	8/3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1호 발간 - 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9/1(수)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 시작 - 발언자, 키워드를 통한 회의록 검색 및 시각화 서비스 제공	
예산정책처	주중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 - 지방재정에 대한 해설서 발간을 통한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 - 지방재정 현황 제공을 통한 예결산 심사의 효과적인 지원	
	주중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6호 발간 - 비용추계 세제분석 관련 국내외 최근 이슈 소개 -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입법조사처	8/30(월)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온라인 이용자추적 투명성	ZOOM
	8/31(화) 07:30	「제8회 NARS 시선과 논단」 -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ZOOM

[별첨1] 제390회국회(8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8/30(월)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 청문회
정무위	8/30(월) 10:00	예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 산회 후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안 상정
국방위	8/31(화) 10:00	예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행안위	8/30(월) 10:00	제1법안심사소위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입법공청회 대한민국 나라꽃 법제화에 대한 입법공청회
산자위	8/30(월) 14: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방위	8/30(월) 09:30	예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9/1(수)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법안 상정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30(월) 13:30	(탄소국경조정!) 산업대응 지원과 입법 과제	한정애, 유의동 의원실, 국 회기후변화포럼 외	유튜브 생중계
8/30(월) 14:30	(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고영인 의원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외	ZOOM
8/31(화) 13:00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	장혜영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8/31(화) 14:00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조응천, 조승래 의원실, 미 래경제연구회 외	ZOOM
8/31(화) 15:00	탈플라스틱 연속 간담회 (3회차)	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9/2(목) 14:00	게임 섯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토론회	조승래, 허은아 의원실	ZOOM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3(월) 14:00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 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김예지, 김민석, 이종성 의원실	ZOOM 화상회의
8/23(월) 14:00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 회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경기연구원 외	유튜브 생중계
8/24(화) 14:00	OTT 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임오경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8/25(수) 14: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강선우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